

한국콘텐츠진흥원-한화생명보험(주) 업무 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화생명보험(주)(이하 ‘양 당사자’라 한다)은 상호 교류·협력을 통해 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(이하 ‘본 협약’이라 한다)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당사자 간 상호 교류, 협력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

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,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1. 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기획·개발·운영
2. 보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연계 활용
3. 협력 프로그램 추진시 온·오프라인 공동 홍보·마케팅

제3조(성실이행)

양 당사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

① 양 당사자는 본 협약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입수한 상대방 당사자의 경영상의 정보와 기타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한 비밀정보(이하 ‘비밀 정보’라 한다)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본 협약의 이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
1. 비밀 정보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인 경우
2.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정보제공자(다만 본 협약을 통하여 알게 된 자는 정보제공자에 포함된다) 이외의 적법한 출처로부터 비밀 정보를 알게 된 경우
3.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

③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전까지 일방이 서면으로 기간

의 연장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약기간은 종료한다.

제6조(수정 및 변경)

본 협약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

제7조(해지)

- ① 양 당사자는 제5조 (협약기간)에 의한 협약 종료 외에 서면 합의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그 외에 제4조 (비밀유지) 의무를 위반한 경우, 기타 본 협약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협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서면 의사표시로써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
제8조(법적 구속력)

본 협약의 어떤 내용도 각 당사자에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, 제4조(비밀유지)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제9조(분쟁 해결)

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은 양 당사자 간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10조 (보관)

본 협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4월 19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김영준 (인)



한화생명보험(주)
서울 영등포구 63로 50
한화금융센터 63

대표이사 차남규 (인)

